

● 제278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2.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양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8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박양숙 의원 발의
- 나. 제출일자 : 2018년 2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19일

2. 제안이유

- 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

조)

-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시장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한의학 육성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제정안은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안 제출되었음.
-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거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관련

- 동 조례 제정안은 한의약을 육성하는 것으로 한의학 육성은 한약학에 의한 한약사와 이들이 운용하는 한의학 기술과 관련된 사안으로 동 조례 제정안 제2조는 한의약과 한의약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조항을 이기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동 조례 제정안 제3조는 시장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시책을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한의학 육성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 조례 제정안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의 조항을 이기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구체적인 수행방향과 관련

- 동 조례 제정안 제5조는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 운용해야 한다고 하여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시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 상위법의 조항을 이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의 경우 “4. 한약시장의 육성·지원” 이나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내용상으로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음.
- 동 조례 제정안 제8조는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시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시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이에 해당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제정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과 학계, 연구기관 간 협동사업을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한의약 육성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여겨짐.
- 제정안 제8조제4항의 경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이미 한의약 전담인력이 보건소, 시립병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인사권 침해이기 보다는 현

재 상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종합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이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의 육성과 관련하여 한의약에 대한 법적인 정의 등은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한 것으로 입법에의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장에게 부과하는 의무 등도 대부분 상위법의 사항을 이기한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무리는 없다고 할 것임.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현재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시민건강국의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서울의료원 한의학과 운영 등)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보임.